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2019. . .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수를 조정하여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중복 가입 단체 수 조정(안 제3조제2항)
 - 개정안
 -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수정안
 -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중복하여”를 “2개까지 중복”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u>중복</u> <u>하여</u>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친 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 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2개까</u> <u>지 중복</u> -----. ----- --.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2개까지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미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의원연구단체의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의원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연구활동비 지원범위)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는 그 연구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자료 수집비·여비·식비

2. 회의비 및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의장이 결과보고서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6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성원(명)

[illegible]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으면 한함)

일 일 년

신청인: ○○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 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 활동비	소요액	
	산출내용	「붙임」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신청인: ○○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등록서

등록번호		제 호
등록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기간		~
연구활동비	지원액	
	지원조건	
비고		

귀 단체를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 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구미시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록	단체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 사유				
연구주제	주제명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활동계획	연구방법 활동내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연구활동비 지원	지원액				
	세부내용	「세부내용: 붙임」			
비고					

년 월 일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변경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사유			
변경 후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고			

※ 첨부: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세부결과보고서	「세부내용: 붙임」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세부내용: 붙임」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구미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illegible]